



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통보

-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29(2024.6.28.)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 집행 특례'가 '24.12.31.까지 연장되었음을 [붙임1~2]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적용기간 이후 종료
-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계약 시 선금지급, 선금의 부채 제외** 등 집행 특례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재정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기집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단체 지방계약 특례 연장 통보(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계약 집행 특례 1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주무관

남지현

지방교육행정사
무관

고수용

지방교육재정과
장

전결 07/02
조훈희

협조자

시행 지방교육재정과-3583 (2024. 7. 2.) 접수 재무과-13846 (2024. 7. 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 (어진동) / <https://www.moe.go.kr>
전화 044-203-6311 /전송 044-203-0000 /ttr9905@korea.kr / 공개